

제314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의안번호 제11-00071호)



2022. 9.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

□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입니다.

□ 본 의원 외 25명이 공동발의하고 21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현행 조례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원(사업장)을 오로지 세탁소로 한정하고 있어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을 정의(안 제2조제5호)하고, 소규모 배출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0조)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배출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안 제21조)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